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2. 1 선고 2021가합102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백 담당변호사 정영주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김윤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노환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2020. 2. 20.경 체결된 20,000,000원, 2020. 2. 26.경 체결된 25,000,000원, 2020. 5. 28.경 체결된 100,000,000원, 2020. 6. 13.경 체결된 15,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80,000,000원, 피고 B은 D에게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판결금채권

1) E, F은 2017년경 D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G에 제주시 H, I 지상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2) D는 2019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2,792,475,000원을 E, F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3) E, F은 2020. 3.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 시설관리 권한 등을 위임하였고, 같은 날 D를 상대로 가지는 2,792,47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20. 7. 9. D를 상대로 2,792,475,000원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1079호), 위 법원은 2020. 12.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는 2021.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D의 아파트 매매대금의 수령 및 그 처분 내역

1) D는 2020. 2. 20. J, K에게 인천 연수구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8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J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020. 2. 20. 2,000만 원, 2020. 2. 25. 3,000만 원, 중도금으로 2020. 5. 6. 3,250만 원, 잔금으로 2020. 5. 28. 114,796,462원¹⁾을 지급받았다.

2) D는 2020. 2. 20. 2,000만 원, 2020. 2. 26. 2,500만 원, 2020. 5. 28. 1억 원, 2020. 6. 13.

1,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3) 피고 B은 2020. 7. 24.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8,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D의 피고 B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D에게 1억 6,000만 원을, 전득자인 피고 C은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2018. 3. 12.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 후 대여금의 일부인 8,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송금행위에 사용된 피고 B의 계좌는 D가 관리·사용하였던 계좌이고, 일부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는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E, F에게 지급하지 않은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E, F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성립된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D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처분과 관련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와 피고 B은 부부 사이인 점, 최초 송금 시점인 2020. 2. 20.부터 최종 송금 시점인 2020. 6. 13.까지 사이에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직후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이 사건 송금행위는 D가 J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은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② D는 피고 B의 계좌로 약 4개월동안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생활비로 보기에는 액수가 큰 점, ③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피고 B의 계좌를

관리·사용하였다거나 피고 C이 D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모두 D의 피고 B에 대한 증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 D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피고 B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D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의 범위

D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C은 피고 B에게 8,000만 원, 수익자인 피고 B은 D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석, 판사 이강호, 판사 김승현

1) 매매계약서상 잔금 7억 4,250만 원에서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잔금으로 보인다.